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42375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423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5563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5. 11. 25.

판결 선고 2015. 12. 1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5563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처인 E과 딸인 원고들과 F, G 그리고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1]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가지번호 없이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부동산을 가리킨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 28. [표 1]의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2002. 1.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 1]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 상속)	피고 소유
---	-----------------------	---------------------------	-------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 상속)	피고 소유
2	포천시 H 답 1924㎡ (2011. 8. 5. 분할)	2-1	H 답 952㎡	2002. 1. 31. (망인 증여)
2-2	I 답 317㎡			
2-3	J 답 655㎡			
3	포천시 K 답 1878㎡ (2011. 8. 5. 분할)	3-1	K 답 822㎡	2002. 1. 31. (망인 증여)
3-2	L 답 311㎡			
3-3	M 답 745㎡			
4	포천시 N 답 2063㎡ (2011. 8. 5. 분할)	4-1	N 답 654㎡	2002. 1. 31. (망인 증여)
4-2	O 답 338㎡			
4-3	P 답 1071㎡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8	포천시 Z 답 1722㎡ (2011. 8. 5. 분할)	8-1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8-2	R 답 736㎡	경기도 소유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9	포천시 S 전 9289㎡ (2014. 7. 25. 분할)	9-1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9-2	T 전 6568㎡	대한민국 소유 (2014. 7.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9-3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피고 소유		
10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2008. 10. 29. (협의분할 상속)	피고 소유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과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의 누나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표 1]의 순번 1, 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3. 14. 피고의 누나들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2면에는 '증여 및 상속 부동산 목록 확인서'의 부동산 목록으로 [표 1]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이 각 기재되어 있다.

[표 2]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을 피고 1인 명의로 대표하여 등기하였던 사실을 확약하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 유지할 것임을 확약한다.
-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근저당설정, 보증 및 양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할 당시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변경될 시에는 피고의 지분은 해당 건에 대하여 50%, 나머지 50%는 형제들의 공동지분으로 명의 변경할 것임을 확약한다(이하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이라 한다).
- 단, 본 부동산 중 일부분이 도로 건설로 인해 수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피고를 포함한 어머니(E)와 형제들이 균등하게 분할, 취득하기로 한다(이하 '보상금 분배 규정'이라 한다).

마. [표 1]의 순번 2-1 내지 3, 3-1 내지 3, 4-1 내지 3, 8-2번 기재 각 부동산이 2011. 8. 5.

경기도에 수용되어(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용'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수용의 대상이 된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차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경기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보상금 분배 규정에 따라 피고의 누나들에게 이 사건 제1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의 1/6에 해당하는 57,711,758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표 1]의 순번 9-2번 기재 부동산이 2014. 7. 25. 대한민국에 수용되어(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용'이라 하고, 이 사건 제2차 수용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210,701,330원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290,081,078원 및 지방소득세 29,008,107원 합계 319,089,185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 B는 2003. 1. 30., 원고 A는 2005. 10. 10. 각 망인으로부터 30,000,000원씩을 송금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요지

피고는 2010. 3. 14. 피고의 누나들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들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할 당시와 다른 상태로 변경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지분은 피고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은 피고의 누나들 공동 명의로 각 소유 명의를 변경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분이 도로 건설로 수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및 그들의 모친인 E 6명이 균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8. 5. 이 사건 제1차 수용 부동산이 경기도에 수용되고, 2014. 7. 25.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수용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1/6 상당인 57,711,75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수용되지 않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 피고의 누나들 전체의 지분 1/2 × 피고의 누나들 전체 지분 중 원고들의 각 지분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 900,000,000원의 1/6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사이에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근저당설정, 보증 및 양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할 당시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변경될 시에는 피고의 지분은 해당 건에 대하여 50%, 나머지 50%는 형제들의 공동지분으로 명의 변경할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인 이 사건 제1, 2차 수용 부동산의 등기상태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수용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① 이 사건 제1, 2차 수용의 경우도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상의 등기상태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상태 변경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제1, 2차 수용의 경우도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상의 등기상태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근저당설정, 보증 및 양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상태가 변경될 시 적용된다고 하여 등기상태의 변경사유를 폭넓게 정하고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수용은 모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에 정한 매각 또는 양도와 달리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차 수용은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상의 등기상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만 등기상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 또는 '해당 부동산'이라고 지칭하면서도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에서 피고 단독 명의에서 공동지분으로 명의변경할 대상은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 건에 대하여'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때 '해당(該當)'이라 함은 '무엇과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 건이라고 적시할 때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일정한 조건이나 내용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명의변경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매각, 근저당설정, 보증 및 양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초 등기상태에 변동이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개별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수용의 대상이 아닌 [표 1]의 순번 1, 5 내지 7, 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수용에 따라 그 일부가 수용된 [표 1]의 순번 8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차 수용에 따라 그 일부가 수용된 [표 1]의 순번 9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토지수용보상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보상금 분배 규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도로건설로 인해 수용되는 부분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및 그들의 모친인 E 6명이 균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1,210,701,330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290,081,078원 및 지방소득세 29,008,107원 합계 319,089,185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수용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실수령 토지수용보상금의 1/6인 148,602,024원(= (토지수용보상금 1,210,701,330원 - 세금 319,089,185원) ÷ 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각 148,602,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상금 분배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순번 9-2번 부동산이 수용된

다음날인 2014.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보상금 분배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항변

1)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의 누나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속재산의 정리와 관련하여 각 3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이와 같이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이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정리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누나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5. 1. 8.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각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표 1]의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2002. 1. 31.이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시점은 원고 B의 경우 2003. 1. 30., 원고 A의 경우 2005. 10. 10.인 사실, 이 사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제2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만 1,210,701,33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수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1/6 상당인 각 57,711,758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이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03. 1. 27.부터 2007. 2. 16.까지 합계 19,5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한 시점과 피고에게 [표 1]의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이 3년 이상 차이가 나고 피고 역시 망인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의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약정이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는 목적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비하여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는 물론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해 준 지분(각 1/8)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크므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표 1]의 순번 1, 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도 [표 1]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일정 지분을 인정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을 일부 이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이 이미 망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망인 생전의 재산 증여 경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E에게 문의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기만에 의한 취소항변

1)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의 누나들은 망인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와 피고의 누나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세금문제 때문에 등기만 피고 명의로 했을 뿐 자신들의 몫도 포함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들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5. 6. 9.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를 말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의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비하여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나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해 준 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크고 피고 역시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를 기망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기망으로 인한 착오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정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별지